

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

1. 4대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

- 가. 4대 보험 가입 확인서
- 나. 재직(계약) 증명서

2. 해외취업자

- 가. 비자사본

나.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: 고용계약서의 형태이거나 고용계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써, 근로시간이 확인되고, 계약시작일과 종료일(또는 근로시작일과 자료 발급시 날짜)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3. 농림어업종사자(아래 증빙자료 중 택1)

- 가. 농업인확인서(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 의거)
- 나. 농업경영 등록확인서(농업인용,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)
- 다.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
- 라. 어업인확인서(어업인확인서 발급규정(해양수산부 고시) 의거)
- 마.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)
- 바. 어업허가내역서(어업허가증, 수산업법 법률 의거)

4. 개인창작활동종사자

구분	인정 조건	증빙자료	비고	
공연	·장소: 등록공연장 또는 사업자등록증종목에 '공연장소'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공연장 ·횟수: 1편 이상 ※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제작진 포함	·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등록증 ·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·학생과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 ·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	4가지 모두 제출	
전시	·장소: 등록미술관, 박물관 또는 사업자등록증종목에 '전시장소'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전시장 ·횟수: 1편 이상 ※ 전시에 참가한 출품자 및 제작진 포함	·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등록증 ·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 ·학생과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 ·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	4가지 모두 제출	
출판 및 출판 출반	오 프 라 인	·출판 및 출판사: 사업등록 3년 이상 ·초판: 500부 이상 『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』 제9조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	·출판사 사업자 등록증 ·학생과 출판사와의 계약서 ·인쇄 증명서	3가지 모두 제출
	온 라 인	·출판 및 출판사: E-book 발간 전문업체 ·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	·E-book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 ·학생과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계약서	2가지 모두제출
영상제작물	·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·오프라인 상영·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	·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(영상물,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)	제출	

	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(영화·영상 출연자 및 제작진 포함)		
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	·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『저작권법』 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	·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 ·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 *한국음악저작권협회, 한국음악실연자연 협회, 한음원제작자협회, 한국미술저작권관 리협회, 한국방송실연자협회,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, 한국방송작가협회, 한국시나리 오작가협회,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	2가지 모두제출

5. 창업자

가. 사업자 등록증(학생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어야함.)